

청주지방법원 2020. 1. 17 선고 2019가단928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 종중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. 17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소유자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양희

별지